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876

발의연월일: 2021. 5. 3.

발 의 자:이병훈·홍성국·기동민

최종윤・김승원・정성호

이성만 · 김영호 · 정청래

주철현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공연활동의 진흥을 목적으로 두고 주로 공연장 관련 하드웨어와 그 운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무대예술 전문인 등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이 없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실태조사에서도 안전관련 사항은 누락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또한, 공연 안전제도 운영, 관련 제도 정비, 안전진단 등을 총괄하는 공연안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중장기적계획 수립, 안정적 예산 확보 등 공연 안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기관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현재 체육관, 공원등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는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할의무는 있으나, 관람자에게 피난절차 등의 주지의무는 없어 공연장운

영자와 마찬가지로 관람자에게 피난절차의 주지의무를 가지는 것이 공연 중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함.

한편, 현행법에서는 재해예방조치와 무대시설 안전진단만 규정하고 있어, 공연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가 어려워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의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음. 이에따라 중대한 사고 범위에 포섭되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고를 보고토록 하고, 사고조사에 필요한 경우 공연장운영자등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연장 안전정보는 상시적으로 공연 및 공연장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필수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해야 할법적 근거 부재로 공개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공연장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공연활동의 진흥뿐만이 아니라 공연장 등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 하고, 공연장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 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연장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목적을 명문화하고 공연예술진흥기 본계획에 공연장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1조 및 제3조제2항제7호 신설).

- 나. 무대예술 전문인 등 공연예술 작업자는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공연예술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할 권리를 가짐(안 제10조의2 신설).
- 다.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도 공연장운영자와 마찬가지로 관람객에게 비상시 피난 절차 등을 관람객에게 주지시키도록함(안 제11조의5제1항).
- 라. 공연장운영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고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고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1조의6 신설).
- 마. 재해대처계획 등의 재해예방조치와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체계적 지원 등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 문화함(안 제12조의5 신설).
-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이 이용하는 공연장의 안전과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공연장 안전 관련 정보를 제출하는 데 협조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7 신설).
- 사. 안전관리조직을 운영하지 않는 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자, 사고보고를 하지 않거나 자료제출 의무를 거부한 자,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안 제43조제3항).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예술의 자유를"을 "예술의 자유와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작업할 권리를"로, "진흥을"을 "진흥 및 공연장 등의 안전관리를"로 한다.

제3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공연장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조의2(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작업할 권리) ① 무대예술 전문인 등 공연예술 작업자는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공연 예술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공연장운영자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이하 "공연장운영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공연예술 작업자의 권 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제1항 본문 중 "공연장운영자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이하 "공연장운영자등"이라 한다)는"을 "공연장운영자등"으로 한다.

제11조의5제1항 중 "공연장운영자는"을 "공연장운영자등은"으로 한다. 제1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조의6(사고보고의무 등) ①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연장의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은 사고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사고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공연장운영자등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누구든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 · 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 · 은폐하는 행위

제3장에 제12조의5부터 제12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5(공연안전지원센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재해예방조치와 제12조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체계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전담기

- 관(이하 "공연안전지원센터"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의6(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안전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제12조의5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 3.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4. 제12조의5제2항에 따른 업무를 부실하게 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 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 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의7(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장의 안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1.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정보 및 등록 현황

- 2. 제11조에 따른 공연장의 재해대처계획
- 3. 제11조의4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의 안전교육 수료 정보 및 현황
- 4. 제11조의6에 따른 사고보고의 내용
- 5. 제12조에 따른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 6.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현황
- 7. 그 밖에 공연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장의 무대시설 안전진단 및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 1. 공연장 명칭 및 소재지
- 2. 안전진단실시 기관 및 기간
- 3. 안전진단 결과와 유효기간
- 4. 각종 안전점검 결과
- 5. 그 밖에 공연장의 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장 운영자,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안전교육기관,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등록하도록 요청할 수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한다.

④ 그 밖에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연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 하여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한 자
- 2. 제11조의3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 3. 제11조의4를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4.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사고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의무를 거부한 자
- 5. 제11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각 호의 행위를 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u>예술의 자유</u>	제1조(목적) <u>예술의 자유</u>
<u>를</u> 보장함과 아울러 건전한 공	와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
연활동의 <u>진흥을</u> 위하여 공연	<u>창작환경에서 작업할 권리를</u>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진흥 및 공연장 등의 안전
	관리를
제3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등)	제3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	②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되는 공연예술진흥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공연예술의 지역적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그 기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7. 공연장 등의 안전관리에 관
	<u>한 사항</u>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③ (생략) <신 설>

운영자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 서 공연을 하려는 자(이하 "공 연장운영자등"이라 한다)는 공 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필 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장운영 또는 공 연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 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미달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공연예술 작업자의 안 전한 창작환경에서 작업할 권 리) ① 무대예술 전문인 등 공 연예술 작업자는 안전한 창작 환경에서 공연예술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② 공연장운영자 및 공연장 외 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 (이하 "공연장운영자등"이라 한 다)는 제1항에 따른 공연예술 작업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안전관리비) ① 공연장 제11조의2(안전관리비) ① 공연장 운영자등은----

② (생략)

제11조의5(피난안내) ① <u>공연장은</u> 정 영자는 화재 등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공연장에 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등이 표시되어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 절차, 노약자·장애인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피난 방법, 그 밖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알고 있어야할 사항을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시켜야한다.

② (생 략)

<u><신 설></u>

	2	(현	행고	4 4	같음	-)				
()	113	스의	5()	티난	안1	게)	1	공	년 장	운
	<u>영</u> ス	ㅏ등	은-							
	2	(현	행고	中 不	같음	-)				
()	113	스의	6(メ	나고	보.	고의	무	니 니	=)	1
	제1	1조	에	叫	른	재 र	해대	처	계획	을

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고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사고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장운영자등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누구든지 문화체육관광부장 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 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이 실시하는 사고조사와 관련 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 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 위
-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 폐하는 행위
- 제12조의5(공연안전지원센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조 에 따른 재해예방조치와 제12

<신 설>

<신 설>

조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체계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전담기관(이하 "공연안전지원센터"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업무에 관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6(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연안전지원센터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안전진단기관으로 지

 정을 받은 경우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제12조

<신 설>

- <u>의5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u> 행한 경우
- 3.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 오
- 4. 제12조의5제2항에 따른 업무 를 부실하게 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 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의7(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 장의 안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 하기 위하여 공연장안전정보시 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1.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정보 및 등록 현황
 - 2. 제11조에 따른 공연장의 재 해대처계획
 - 3. 제11조의4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의안전교육 수료 정보 및 현황

- 4. 제11조의6에 따른 사고보고 <u>의 내용</u>
- 5. 제12조에 따른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 6.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현황
- 7. 그 밖에 공연장의 안전관리 에 필요한 것으로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 장의 무대시설 안전진단 및 안 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 1. 공연장 명칭 및 소재지
- 2. 안전진단실시 기관 및 기간
- 3. 안전진단 결과와 유효기간
- 4. 각종 안전점검 결과
- 5. 그 밖에 공연장의 정보로 관 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 어 문화체육관광부렁으로 정 하는 사항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 장 운영자,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안전교육기관,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공연장 안전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제43조(과태료) ①・② (생 략)

③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 연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 나 조작하여 공연예술통합전산 망에 전송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등록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연장안전정보시 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 로 정한다.

제43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연 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 나 조작하여 공연예술통합전 산망에 전송한 자
 - 2. 제11조의3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하지 아니한<u>자</u>
 - 3. 제11조의4를 위반하여 안전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4.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사고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의무를 거부한 자

	5. 제11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각 호
	의 행위를 한 자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